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합520088 판결 [구상금 분담금 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43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합520088 판결

전 문

원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병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설지은

변론 종결2021. 8. 26.

판결 선고2021.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12,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2014. 10. 17.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C'이었는데,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 1. 6. 해산되고 재단법인 D에 통합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와 피고는 E 기업 상호 간의 교류 및 단지의 활성화, 기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한 'F'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최한 법인이다.

2) 성남시 분당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H 건물 사이에는 집회·행사·사고 등을 위한 일반광장(이하 '이 사건 광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앞에 위 건물 지하의 근린생활시설로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구(이하 '이 사건 환풍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행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0. 17. 17:40경 이 사건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인기 걸그룹 I의 공연이 시작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과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환풍구에 인접한 화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환풍구의 덮개 위로 올라서서 I의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53경 이 사건 환풍구의 하중을 받는 세로 지지대 2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간격이 더 넓게 수직낙하통로 공간 위에 설치된 지지대에 사람들의 하중이 더 집중되어 위 지지대가 붕괴되었고, 이에 그레이팅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수직낙하통로 지하 18.5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총 16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1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간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 대표는 2014. 10. 20.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이하 '2014. 10. 2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유가족들("갑")과 원고 및 피고("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갑"에게 아래 합산액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 생략)

6. "을"이 "갑"에게 지급한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을" 상호간, 경기도, 성남시 등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나 판결에 따른 책임비율에 따라 "을" 상호간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 간 정산한다.

2)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서(이하 '2014. 11. 3.자 합의서'라 하고, 2014. 10. 20.자 합의서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갑")와 피고("을")은 이 사건 사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협의하여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손해사정인이 산출한 일일이익과 위자료에 대해 "갑"과 "을"은 협의 후 "갑"이 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2. 우선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자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호간에 구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6. 8. 9.까지 사망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및 부상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계비, 보상금 등으로 7,913,634,701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구상금

186,306,680원을 각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6. 9. 28. 346,050원, 2016. 11. 9.

3,053,270원, 2017. 8. 31. 40,100원의 각 건강보험료 구상금을 지급하여 합계

8,103,380,801원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5. 3. 17.까지 사망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및 부상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3,391,798,050원,

장례비 4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손해사정비용으로 40,000,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3,911,798,050원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1) 원고과 피고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그 소속 책임자 7인(이하 위 회사들은 'J', 'K', 'L', 'M'이라고만 하고, 위 4개 회사 및 위 회사들 소속 책임자 7인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J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 설계 및 감리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풍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J 등 및 그 소속 책임자 7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55660,569966(병합)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1. 25. 이 사건 사고가 ① 이 사건 환풍구 공사의 시공자(J, K, L 및 그 소속 책임자들)가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그 하중 지지능력이 당초 예정된 강도보다 현저히 못 미치도록 시공하거나 시공되도록 방치한 과실, ② 위 공사의 감리자(M 및 그 소속 책임자)가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시공자들의 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 ③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원고, 피고)가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기획·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15%, 피고 25%, J 및 그 책임자 40%, K 및 그 책임자 10%, L 및 그 책임자 5%, M 및 그 책임자 5%라고 판단하였다. 위 과실비율은 2020. 8. 21. 선고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14200,2014217(병합)호]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의 제1심,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3)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원고 8,103,380,801원, 피고 3,911,798,050원)이 J 등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 금액 중 J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총 4,155,431,611원(= J 및 그 소속 책임자 2,770,287,742원 + K 및 그 소속 책임자 692,571,935원 + L 및 그 소속 책임자 346,285,967원 + M 및 그 소속 책임자 346,285,967원), J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총 2,020,954,181원(= J 및 그 소속 책임자 1,347,302,788원 + K 및 그 소속 책임자 336,825,697원 + L 및 그 소속 책임자 168,412,848원 + M 및 그 소속 책임자 168,412,848원)으로 각 정해졌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원고 3,947,949,190원(= 8,103,380,801원 - 4,155,431,611원), 피고 1,890,843,869원(= 3,911,798,050원 - 2,020,954,181원) 부분은 J 등의 과실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서 J 등이 공동면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 후인 2020. 10. 13.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58,401,7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3,947,949,190원이고, 그중 피고의 과실비율(25/40)에 해당하는 2,467,468,241원과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 2020. 10. 13.까지의 각 법정이자 576,274,057원을 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원리금은 2020. 10. 13. 기준으로 총 3,043,742,298원이다. ② 그리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1,890,843,869원이고,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15/40)에 해당하는 709,066,450원과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197,761,546원을 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원리금은 2020. 10. 13. 기준으로 총 906,827,996원이다.

따라서 위 구상금의 차액 2,136,914,302원(= 3,043,742,298원 - 906,827,996원)에서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지급한 1,758,401,796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금 378,512,506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8,512,506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4.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4. 11. 3.자 합의서 제2항에서 "우선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호간에 구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날을 구상채무의 이행기로 정함과 동시에 법정이자도 그 이후부터 기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구상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기산일은 해당 금액 지출일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 2020. 9. 10.이다.

이에 따라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2020. 10. 13.을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액은 2,478,960,556원(원금 2,467,468,241원 + 법정이자 11,492,315원)이고, 피고의 구상금액은 712,368,951원(= 원금 709,066,450원 + 법정이자 3,302,501원)이므로, 위 구상금액의 차액 1,766,591,605원(= 2,478,960,556원 - 712,368,951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758,401,796원을 공제한 나머지 8,189,809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4.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채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 또는 피고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상대방 또한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들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이 15%, 피고의 과실비율이 25%로 정해진 사실은 각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각자의 과실비율(원고는 15/40, 피고는 25/40)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각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25/40에 해당하는 구상금 원금이 2,467,468,241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3,947,949,190원 $\times$ 25/40)1) 이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15/40에 해당하는 구상금 원금이 709,066,450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1,890,843,869원 $\times$ 15/40,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58,401,79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날을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 원리금액에서 피고의 구상금 원리금액을 뺀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1,758,401,796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잔존 구상금채권액 산정

1)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기산점 위에서 살핀 대로, 2014. 11. 3.자 합의서 제2항에서 "우선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호간에 구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공동면책일, 즉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출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하고(민법 제425조 제2항, 제1항),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 관계에서도 각자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그 출재일 이후부터 곧바로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가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원칙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인정하려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문언이 위 민법 규정과 명확히 배치되거나 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필요하다.

② 그런데 위 합의서 조항을 법정이자의 기산일까지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날'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면, 위 합의에 따라 구상권자(원고와 피고 모두

구상권자가 된다)로서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출재일 이후부터 관련 판결 확정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어떠한 합의를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의사가 문언상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법정이자'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는바, 위 합의서 조항은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비로소 상호간 정당한 금액에 따른 구상·정산이 가능하므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후 지체 없이 상호 구상·정산하자는 내용의 조항, 즉 '구상금채무의 이행기'를 정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④ 또한 법정이자란 지연손해금과 달리 해당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나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기가 위와 같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정이자란 그 출재일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피고는 위 2014. 11. 3.자 합의서 제2항 중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부분을 근거로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란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상해 피해자들에 관한 위 2014. 11. 3.자 합의서와 달리 사망 피해자들에 관한 2014. 10. 20.자 합의서에는 위 문구가 없는바, 사망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과 달리 유독 상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하여만 법정이자 기산점을 달리 합의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구체적 금액 산정 가) 원고의 구상금 원금 2,467,468,241원 중 815,748,668원이 2015. 2. 12. 이전에, 1,650,343,805원이 2016. 8. 10. 이전에, 138,420원이 2016. 9. 29. 이전에, 1,221,308원이 2016. 11. 10. 이전에, 16,040원이 2017. 9. 1. 이전에 각 지출된 금액에 관한 것인 사실, 피고의 구상금 원금 709,066,450원은 모두 2015. 3. 17. 이전에 지출된 금액에 관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들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 원금과 이에 대한 각 최종 지출일부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를 아래와 같이 계산(이하 원 미만 버림)하면, 2020. 10. 13. 기준 구상금 원리금 합계액은 원고 3,043,742,298원(= 원금 2,467,468,241원 + 법정이자 576,274,057원),

피고 906,827,996원(= 원금 709,066,450원 + 법정이자 197,761,546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1) 원고의 구상금 법정이자 : 총 576,274,057원(= 231,240,230원 + 344,763,603원 + 27,968원 + 239,756원 + 2,500원)

○ 2015. 2. 12. 이전 지출한 815,748,668원에 대한 2015. 2. 12.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31,240,230원[= 815,748,668원 × 5% × (5 + 245/366)]

○ 2016. 8. 10. 이전 지출한 1,650,343,805원에 대한 2016. 8. 10.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344,763,603원[= 1,650,343,805원 × 5% × (4 + 65/365)]

○ 2016. 9. 29. 이전 지출한 138,420원에 대한 2016. 9. 29.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7,968원[= 138,420원 × 5% × (4 + 15/365)]

○ 2016. 11. 10. 이전 지출한 1,221,308원에 대한 2016. 11. 10.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39,756원[= 1,221,308원 × 5% × (3 + 339/366)]

○ 2017. 9. 1. 이전 지출한 16,040원에 대한 2017. 9. 1.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500원[= 16,040원 × 5% × (3 + 43/365)]

(2) 피고의 구상금 법정이자 : 197,761,546원

○ 2015. 3. 17. 이전 지출한 709,066,450원에 대한 2015. 3. 17.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197,761,546원[= 709,066,450원 × 5% × (5 + 211/365)]

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원리금 3,043,742,298원에서 피고의 구상금 원리금 906,827,996원과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지급한 1,758,401,796원을 법정이자, 원본의 순서로 각 변제충당하면, 결국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20. 10. 13. 기준으로 원금 378,512,506원(= 3,043,742,298원 - 906,827,996원 - 1,758,401,796원)이 남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구상금 원금 378,512,50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상금 중 일부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도근

판사이승연

판사김동호

1) 해당 원금의 각 지출 시기별로 25/40을 곱하여 합하는 과정에서 2.75원의 오차가 발생하였다.